

## 구매물품보상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(기타) - 기타
2. 보험종목의 명칭 : 구매물품보상보험
3. 보험의 목적
  - 가. 구매물품
4. 보험기간
  - 가. 보험기간: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나.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  - 가.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른다.
7. 기타
  - 가. 보험료의 할인·할증에 관한 사항 : 없음
  - 나. 판매채널 : 범용 (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.)
  - 다.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    - ①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·제공·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.
    - ② 판매·제공·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- ③ 재화·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,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    - ④ 인터넷 홈페이지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]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한다.
      - 가.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
      - 나.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

Chubb. Insured.<sup>SM</sup>